

대통령령 제17973호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세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3년 5월 1일

국무총리 고건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김진표

장관

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제3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나

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다만,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제외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과세대상물품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서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하여는 교통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연료용 유류에 대하여는 교통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앞으로는 석탄 등에서 추출한 휘발유 대체유류와 같이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류에 대하여도 교통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교통세에 있어서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재정경제부고시제2003-11호

석유제품매점매석행위금지등에관한고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5월 13일

재정경제부장관

제1조(목적) 특별소비세법(법률 제6294호, 2000.12.29. 공포) 및 교통세법(법률 제6295호, 2000.12.29. 공포)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음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나목, 다목, 라목, 바목 및 아목에 규정된 과세물품
2. 교통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과세물품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수입업자(이하 "석유수입업자"라 한다.)

3. 석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 ① 석유정제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반출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전년도 5월에서 8월까지 반출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의 115%(중유는120%)를 초과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석유수입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수입신고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물량을 초과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LPG중 부탄에 대하여는 전년도 5월에서 8월까지 수입신고한 물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의 120%
 2. 제1호의 물품을 제외한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직전 2개월(3월 및 4월)간 수입신고한 물량의 115%(중유는 120%)

③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재정경제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석유판매업자는 매년 5월 및 6월에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석유판매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수입물량의 보고)

①제4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이 고시가 시행되는 기간동안 매년 5월과 6월중에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을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9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9호는 폐지한다.

〈해설〉

에너지세계개편에 따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7월 1일 경유세가 크게 오르는 것을 감안, 인상전에 과도한 물량이 통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1년 5월에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다. 이 고시에서는 매년 5월과 6월에 석유수입업자가 수입 ‘통관’ 하는 물량이 전년 동기 또는 직전 2개월의 1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물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세법상 ‘수입신고’ 시에 세액이 확정되는 점을 이용하여, 5월과 6월에 다량을 수입신고하여 세액을 확정지은 후 7월 세 인상 후 통관하는 편법이 가능하며, 이럴 경우 7월 이후에 통관하기 때문에 5~6월의 통관물량을 제한하는 고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인상전의 세금을 적용받은 과도한 물량이 세 인상후 통관되어 판매된다면 세금 차이에 따른 폭리를 취함은 물론 낮은 원가를 무기로 시장질서를 혼란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편집자 주〉